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6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자산의 현물출자와 향후 자본금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여 도시철도를 원활히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9. 28. ~ 10. 18.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기업법」”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 한다.

제2조중 “공사”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부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p>
<p>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p>
<p>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15조(예산과 결산)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⑤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별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생략)</p>	<p>제15조(예산과 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기업법」-----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8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사채의 발행) ①-----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행정안전부장관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지방공기업법

第49條 (設立)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福利 및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사업성 등 地方公企業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檢討하여야 한다.

第53條 (出資) ①公社의 資本金은 地方自治團體가 全額을 現金 또는 現物로 出資한다.

②公社의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資本金의 2分の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경우에는 公社의 資本金은 株式으로 分割·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株式의 種類, 1株의 金額, 株式發行의 時期, 發行株式의 總數, 株金의 納入時期 및 納入方法은 條例로 정한다.

第66條 (決算) ①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을 당해 事業年度終了후 2월 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決算完了후 決算書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8條 (社債發行 및 借款) ①公社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발행하거나 外國借款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는 社債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⑤삭제 <2002.3.25>

⑥社債의 발행·賣却 및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